질병군 급여 일반원칙(마취 초빙료관련)

호, 12.11.27.)

- 18.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편(행위별 수가)제2부제6장 바-2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 산정하며, 제1편(행위별 수가)제2부제6장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-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 특정내역 MT007(DRG 세부내역)의 내역구분 'ANE' 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(바 2, L7990)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이외에 추가 산정함
- 이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면허종류,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(작성요령) '15년 의원 단가 기준
- Q.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?

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없음다만, 고시 제2012-153호('12.11.27.)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(유선신고 포함)가 이루어져야함 때문이라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시 인정여부고시 제2012-153

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,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,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- 다음-

- 가.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수술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조치함이 원칙이나 이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. 다만,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인력 등에 대한 변경신고(유선신고 포함)가 이루어져야함
- 나. 천재지변, 기타 예기치 못한 구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
- 다.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·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 임신 또는 분만관련 응급수 술을 시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
- Q. 7개 질병군 수술 후 또는 통증자가조절법(PCA) 실시로 인한 구역 \cdot 구토 치료를 위해 항구토제를 사용한 경우 별도 산정 여부

수술 후 발생한 구역 및 구토의 치료를 위해사용한 항구토제는 요양급여 대상이며 포괄수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<mark>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</mark>. 또한, 7개질병군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(PCA)은 전액본인부담(100 분의100) 항목이며, 이로 인한 구역 및 구토 방지·치료를 위해 항구토제를 사용한 경우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

Q. 질식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"무통분만 경막외 마취"를 실시하였으나, 질식분만에 실패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 "무통분만 경막외 마취"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

질식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한 "무통분만 경막외 마취"는 질식분만에 실패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경우에도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<mark>별도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</mark>

다만, 무통분만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여 무통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분만 후, 이미 가지고 있는 경막외 마취 카테터를 통해 통증자가조절법(PCA)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기료(바22나(3)(나)LA227) 및 재충전약제비 등은 100/100본인부담이 가능함